의안번호	제 588 호		
의 결	2017년 4월 일		
연월일	(제355회)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4월 11일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재창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년 4월 11일

발 의 자 : 엄재창 · 황규철 · 이의영 · 김인수 ·

임병운 · 임회무 · 박한범 의원

1. 제안 이유

의안

번호

588

○ 충청북도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유품종보호권을 유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보상금을 처분 수입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안 제15조)

3. 조례안 : 붙 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5. 예산조치 : 붙 임

6. 관련부서 협의 : 농업기술원과 협의

7. 입법예고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과 제2항 중 "100분의 30"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품종보호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혅 행

개 정 안

제15조(처분보상금) ① 도지사는 제15조(처분보상금) ① 도지사는 상금을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을 ②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을 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 보상금으로 직무육성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도유품종보호권을 유상으로 처 도유품종보호권을 유상으로 처 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액의 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처분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 상금을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 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 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로 직무육성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관계 법 령

-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특허청)
-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가. 명 칭 :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보상

나. 주요사업 : 직무육성품종개발자에게 보상금 지급

다. 추진근거 :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2. 비용 발생 요인

○ 직무육성품종개발자에게 보상금 지급

3. 관련조문

- 제15조(처분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 상금을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u>100분의</u> <u>50에</u>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직무육성품종개발자에게 보상금(처분보상금)을 상향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2016년까지의 지원 현황을 감안하여 비용추계 다. 추 계 결 과 : '17년부터 향후 5년간 총 5천만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7년)	2차년도 ('18년)	3차년도 ('19년)	4차년도 ('20년)	5차년도 ('21년)	계
A	에 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국 비 도 비 라(사업수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A	를 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사 업 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재원 조달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소 계						
의존	보조금						
재원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지방세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4	△△특별회계						
4	△△특별회계						
	구·군비						
1	기 타 ; 민자, 예비비 등						

※ 처분보상금 : '11년도 4종 2,000천원 ' 12년도 7건 2,959천원 '13년도 9건 8,112천원 '14년도 9건 3,998천원 '15년도 11건 4,852천원 ' 16년도 4,201천원

5. 작성자 :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홍성택(☎ 220-5540)